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8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이상헌・신동근・박재호

김기현 · 김민석 · 김병욱

김홍걸 • 문진석 • 김성주

이용우 · 조승래 · 이용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업자는 지정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종 미만 또는 50개체 미만의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보유·전시하는 이른바 '소규모 동물카페'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러 한 소규모 시설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대상에 서 제외되어 안전·보건 등에 필요한 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소규모 동물원'으로 정의하여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규제 중 필요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 등)

법률 제 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규모 동물원"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종이상 또는 1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물원"을 각각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으로, "사항"을 "사항(소규모 동물원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동물원"을 각각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물원"을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으로 한다.

제6조 중 "동물원"을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원"을 각각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물원"을 각각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원"을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물원"을 각각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물원"을 각각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동물원"을 각각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동물원"을 각각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으로 한다.

제14조 중 "동물원"을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동물원·수족관"을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세2호(정위)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1 =1 =1 A)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1의2. "소규모 동물원"이란 제1</u>
	호에 따른 동물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축을 총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 보유 및 전
	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
	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
	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따른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u>
	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등록 등) ① <u>동물원</u> 또는	제3조(등록 등) ① <u>동물원, 소규</u>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u>동</u>	모 동물원
<u>물원</u>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u>사항</u>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u>동물원</u>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수의 목록
- 7.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8. (생략)

② 시·도지사는 <u>동물원</u>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 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

사항(소규모 동물 <u></u>
원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
를 제외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
7.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
8. (현행과 같음)
② <u>동물원, 소규모</u>
동물원

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u>동물</u> 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동물원</u>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략)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u>동</u> 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u>동물원</u> 또는 수 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u>동물원</u>

③ <u>동물</u>
원, 소규모 동물원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의 취소) ①
제4조(등목의 뒤조) ①
г п а
<u>동물원, 소</u>
<u> 규모 동물원</u>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u>동</u>
물원, 소규모 동물원
제7조(금지행위) <u>동물원, 소규모</u>
동묵워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 제8조(안전관리) ① <u>동물원</u> 또는 지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동물원</u>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 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 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 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 조존) <u>동물원</u> 또는 수족관을 운 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u>물원, 소규모 동물원</u>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관리) ① <u>동물원, 소규</u>
모 동물원
②동물원,
소규모 동물원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
존)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
t/ <u>6 월 전, 그 그 6 월 전</u>

1. • 2. (생략)

- 제10조(자료의 제출) ① <u>동물원</u>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 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동</u>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시·도지 사는 <u>동물원</u> 또는 수족관을 운 영하는 자와 <u>동물원</u> 또는 수족 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제7조에 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 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도·점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u>동물원</u> 또는 수족관을 출입하 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자료의 제출) ① <u>동물원,</u>
소규모 동물원
②
<u>동</u>
ㅁ이 ㅅㄱㅁ 도ㅁ이
물원, 소규모 동물원
<u> </u>
<u> </u>
<u> </u>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조치명령) ①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 ② <u>동물원</u> 또는 수족관을 운영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생태계교란 방지) <u>동물원</u>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u>동물원</u> 및 수족관 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비용지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u>동물원</u> 및 수족관 에 대하여 보유 생물의 적절한 보전, 증식 및 질병의 치료 등 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의 일부

<u>.</u>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치명령) ①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	
<u>동물</u>	
<u>원, 소규모 동물원</u>	
1. ~ 4. (현행과 같음)	
② 동물원, 소규모 동물원	
제13조(생태계교란 방지) <u>동물원</u> ,	
소규모 동물원	
<u>동물원, 소규모</u>	
<u>동물원</u>	
제14조(비용지원)	
<u>동물원, 소규모 동</u>	
물원	